

(앞쪽)

사 업 연 도	· · · ~ · · ·	특별비용조정명세서				법 인 명		
						사 업 자		
						등 록 번 호		
① 구 분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)		코드	조정명세서상 명세			⑤ 최저한세 적 용 손금부인액	⑥ 손금불산입 계 (③+⑤)	⑦ 손금산입 계 (②-⑥)
			② 회사계상액	③ 한도초과액	④ 차 감 액			
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(제9조)		302						
⑪ 100% 손금산입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(제74조제1 항)		317						
⑫ 100% 손금산입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(제74조제4 항)		353						
⑬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 보전준비금(제104조의3)		351						
⑭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 보전준비금(제104조의12)		352						
⑮		344						
⑯								
⑰								
⑱								
⑲								
⑳								
㉑								
㉒								
㉓								
㉔								
㉕								
㉖								
㉗								
㉘								
㉙								
㉚								
㉛								
㉜								
㉝								
㉞								
㉟								
㊱ 준비금 계		319				※		
㊲ 특별 감가상각비 계		340				※		
㊳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(법률 제10068호 「조세 특례제한법」 부칙 제4 조 및 「조세특례제한 법」 제28조)		346				※		
㊴ 준비금 및 특별·특례 감 가상각비 계(㉞ + ㉟ + ㊱)		341				※		

작성 방법

1. 조정명세서상 명세란(②,③,④):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. 다만,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②란의 회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2. 준비금 계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(※ 표시란): 최저한세조정계산서(별지 제4호서식)의 ④ 조정감란 중 ㉞의 금액을 옮겨 적고,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.
3.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: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4.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(※ 표시란): 최저한세조정계산서(별지 제4호서식)상의 ④ 조정감란 중 ㉞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,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20호서식(1)]상의 ㉞란, 유형·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액법)[별지 제20호서식(2)]의 ㉞란에 적습니다.
5.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(※ 표시란): 최저한세조정계산서(별지 제4호서식)의 ④ 조정감란 중 ㉞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, 이를 (구)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11호의3서식(1)]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1항제10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률법)[별지 제9호의3서식(1)]의 ㉞란,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액법)[별지 제11호의3서식(2)]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(정액법)[별지 제9호의3서식(2)]의 ㉞란에 적습니다.
6.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 구분(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)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,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㉞란에 적습니다.